

##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어려움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 대응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개최('26.6.11~15)하고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26년 6월 15일부터 '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제 조치 성격의 제도이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요건 등을 검토하고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와 전문가 심층 검토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25.5.), 서산('25.8.), 포항('25.8.), 광양('25.11.)에 이어 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맞춤형 지원(기

업지원, 인력양성 등) 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 \* 이차보전: (대상) 주된 산업 관련 중소·중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시설)  
(이차보전율) 운전 3%p, 시설 1.5~2%p

또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우대보증(신보·기보) 등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한도10억원, 금리(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0.5%p  
(소상공인) 한도7천만원, 금리(소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기업) 설비 4~9% → 12% (중견기업) 입지 5~25% → 30%,  
설비 6~12% → 20%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8~15% → 25%

산업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향후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장	위승복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한정선 (044-203-4425)
		담당자	주무관	염정아 (044-203-4428)

□ 산업위기지역의 위기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차보전**(중소·중견기업),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 추진

□ 이차보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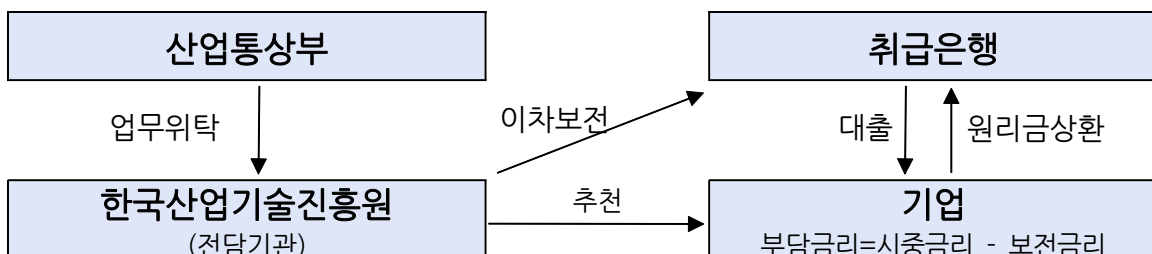
○ **(대상)**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자금 신규대출\* 이차보전

\* 산업위기지역 지정·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대환대출 제외)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3.0%p(중소·중견), 시설자금: 중소기업 2.0%p, 중견 1.5%p
- **(지원기간)**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추진체계)** <sup>전담기관</sup>한국산업기술진흥원, <sup>취급금융기관</sup>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

- (대상)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 근로자 등
- (기업지원) 사업재편 및 기업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인력양성) 산업위기 지역내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맞춤형지원 프로그램(안)]**

맞춤형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기업지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지원, R&D 관련 기술지도, 디지털전환 및 제품 고급화 지원 등
	사업화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활성화, 중장기 사업화 컨설팅, 수용기업용 완성품 홍보 샘플 제작 지원 등
인력양성	산업 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 지역 위기산업 관련 기반기술 특화, 연구개발·특허 창출 전략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습형 교육	기업 현장실습형, 위기산업 내 SW, IT 관련 직무 전환 등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산업위기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내용은 상이

- (추진체계) <sup>전담기관</sup>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up>수행기관</sup>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

